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임용후보자 선출 지침

제정 2022.06.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임용후보자 선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선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지원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지원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조(선출방법) 규정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임용후보자 선출 공고일 이전에 공무출장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비밀 선호도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는 온라인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사를 전달 수 있으며 직접 비밀 선호도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선출 공고일 이후에 출장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직접 비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장 후보자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대학 발전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제10편

기
타
규
정
및
회
칙